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원예산업과, 전화 02-500-2018, 모사전송 02-507-5310, E-mail: kun39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226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2009-196호)」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콩 MON87701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신규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승인번호	승인일	비고
유전자재조합 콩 MON87701	몬산토 코리아(주)	몬산토	미국	제 2011-7호	2011.11.23.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1-2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11,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기 관 명	주 소	처분내용	정지기간
(주)아이에스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41번길 52-20	전자파장해시험업무 정지 3개월	2011.12.16.~ 2012.03.15.
(주)한국규격품질원	경기도 화성시 장덕동길 107-27	전자파장해시험업무 정지 3개월	2011.12.16.~ 2012.03.15.
엘지에릭슨(주)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전자파내성시험업무 정지 3개월	2011.12.23.~ 2012.03.22.